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4 호
----------	--------

제출연월일 : 1996. 1. 26.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1.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 고취를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안 제18조제1항).
- 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5호 및 제6호).
-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5호).
- 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3. 참고사항

- 총무 12146 - 2 ('96. 1. 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 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제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 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당직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 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③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 (파견근무) ①~② (생략)</p>	<p>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 ----- -----</p> <p>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 지 ----- ----- ----- ----- -----</p> <p>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 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p> <p>③당직 및 비상근무자 ----- -----, 당 직 및 비상근무----- -----.</p> <p>④당직 및 비상근무----- -----.</p> <p>제10조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③----- ----- -----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 -----</p>
<p>제2장 근무시간</p>	<p>제2장 근무시간등</p>
<p>제13조 (근무시간) ①(생략)</p>	<p>제13조 (근무시간) ①(현행과 같음)</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②----- -----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p>
<p>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p>
<p>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안	
근속기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0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 신설 >		6년이상	23일
<p>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략)</p>		<p>② ~ 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산입)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 -----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p>	<p>제21조 (병가) ①----- ----- ----- 60일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 ----- ----- <u>180일</u> ----- -----</p>
<p>③(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2조 (공가) ----- ----- ----- -----</p>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u>참가하려 할 때</u></p>	<p>1. ----- ----- ----- -----<u>참가할 때</u></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u>참가하려 할 때</u></p>	<p>3. ----- ----- <u>참가할 때</u></p>
<p>4. (생략) <u>< 신 설 ></u></p>	<p>4. (현행과 같음)</p>
<p><u>< 신 설 ></u></p>	<p>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6.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u></p>

현행	개정안
<p>5. 천재지변·교통사고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신 설 ></p>	<p>7. -----</p> <p>-----</p> <p>-----</p> <p>제23조(특별휴가) ①-----</p> <p>-----</p> <p>-----</p> <p>-----<u>경조사휴가</u>-----</p> <p>-----</p> <p>②-----</p> <p>-----</p> <p>----- <u>출산휴가</u> -----</p> <p>③-----</p> <p>----- <u>여성보건휴가</u> -----</p> <p>-----</p> <p>④-----</p> <p>-----</p> <p>-----</p> <p>----- <u>수업휴가</u> -----</p> <p>-----</p> <p>⑤-----</p> <p>-----</p> <p>-----</p> <p>-- <u>포상휴가</u>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u></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⑥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정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생략)</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 승선평가 -----.</p> <p>⑧----- ----- ----- ----- ----- ----- ----- ----- ----- ----- ----- 퇴직준비휴가 -----.</p> <p>제26조 (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 ----- ----- -----.</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현행	개정안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